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대 ·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기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나.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
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으로 한다.

- ⑤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 -----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현 행	개 정 안
⑤ <u>법 제22조의2제3항</u>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⑥ (생략)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생략) ② <u>법 제27조제2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u>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u> ⑥ <u>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27조제4항</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연 락 처	(042) 481 - 3966